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 19.(수) 15: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 바. 의결사항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2011-02-003)

○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10년 제34차 위원회(6. 10)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 주요 내용

##### ① 위치정보 사업유형 다양화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他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중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

##### ②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기록 및 보존의무를 면제

##### ③ 즉시 통보 규정 완화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완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보의무를 면제  
·이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통신단말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하거나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통보 방법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경우

-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시
-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다른 통신수단으로 알려 줄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등

##### ④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규정 신설

- LBS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

##### ⑤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명령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위반 여부 및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벌칙 규정 등 완화

- 상호 및 소재지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
  - ※ <현행> 위치정보사업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자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제재 처분 완화
  - ※ <현행>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사업폐지) → <개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 (2011-02-004)**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재)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1년도에 미화 60만 달러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내용

① 신청인 : 재단법인 극동방송(대표자 : 김장환)

② 출연인 : 미국 극동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 USA)

③ 출연 예정 금액 : US \$600,000(약 7억원)

④ 출연목적

- 방송을 통한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극동제주AM방송국 송신기 등 전국 극동방송의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2011-02-005)**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5조의4제2항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궐위(우지숙 위원)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의결함

※ 임기 : 전임자의 잔여임기(2011. 1. 19. ~ 2012. 3. 30)

4)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1-02-006)(비공개)

사. 보고사항

1)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향후 추진일정 등을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세부심사기준(안) 주요 내용

① 기본 방향

①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으로 구성

②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350점)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1-1.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40)   |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 20 |
|                               | 1-1-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20 |
|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30)        |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10 |
|                               |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10 |
|                               |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10 |
| 1-3. 신청법인의 적정성(100)           | 1-3-1. 주주구성의 적정성             | 70 |
|                               | 1-3-2. 주요주주의 건전성             | 30 |
| 1-4. 시청자·소비자 권익 실현 방안(90)     | 1-4-1.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 60 |
|                               | 1-4-2.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 30 |
| 1-5.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90) | 1-5-1.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          | 45 |
|                               | 1-5-2.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         | 45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0점)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80) |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 50 |
|                            | 2-1-2.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 30 |
| 2-2.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90)       | 2-2-1. 상품 구성 계획의 우수성       | 60 |
|                            | 2-2-2. 상품 확보 계획의 우수성       | 30 |
| 2-3. 채널 확보계획(30)           | 2-3-1.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        | 15 |
|                            | 2-3-2. 채널 확보계획의 합리성        | 15 |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0점)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3-1. 사업추진계획(40)       |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 20 |
|                       | 3-1-2. 마케팅 및 물류 계획의 우수성      | 20 |
|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40)  |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20 |
|                       |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20 |
| 3-3. 납입자본금 규모(60)     |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 60 |
|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40) |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20 |
|                       |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20 |
| 3-5. 사업성 분석(20)       |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20 |
|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50)  |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 30 |
|                       |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 20 |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0점)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4-1. 재정적 능력(45)  |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 15 |
|                  | 4-1-2. 부채비율(계량)                              | 15 |
|                  |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 15 |
| 4-2. 자금출자 능력(30) |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 10 |
|                  | 4-2-2. 자기자본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 10 |
|                  | 4-2-3.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 10 |
| 4-3. 기술적 능력(25)  |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 15 |
|                  | 4-3-2. 방송기술 및 기타 시설확보 및 활용계획                 | 10 |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00점)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5-1.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 5-1-1.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40 |
| 5-2.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 5-2-1. 유통산업 발전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40 |
| 5-3. 출연금(20)                  |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 20 |

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① **(선정원칙)** 정책목표를 고려, 심사항목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

- '신청법인의 적정성', '상품 구성 및 확보 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는 정책방안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② **(적용 심사항목)** ①신청법인의 적정성, ②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 방안(이상 공익성 및 공적 책임 관련), ③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 ④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이상 중소기업 지원 관련), ⑤납입 자본금 규모, ⑥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이상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관련) 등 6개 심사항목을 제시

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

① **(주요주주의 범위)** 구성주주 중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평가방안)**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심 주주(이하 "우대주주")로 평가

·①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② 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 요건 규정(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등을 고려하여 70% 이상으로 설정

·최대주주가 우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 중 '주주구성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 대해 30점을 부여

- ③ **(기존 홈쇼핑 PP 참여 배제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존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심사 시 평가방안)** 신청법인에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지분 참여한 경우, 해당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해당 홈쇼핑 PP의 출자예정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주주구성의 건전성'(세부심사항목)에서 불이익을 부여
  - 주요주주로 참여한 경우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심사항목)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최저점수를 부여
  -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기존 홈쇼핑 PP가 참여한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홈쇼핑 PP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
- ④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구성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 **(주주구성 변경 금지방안)**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 주주구성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을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와 우대주주의 지분이 7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며,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 법률의 규정, 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승인장 교부 후,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고, 우대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 마련
  - **(대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방지 보완)**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방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에 반영
- ⑤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실행가능성 평가방법)** 모든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주주 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
  -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행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 (건전성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⑥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

-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 21(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6:35)**